

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
(2010. 9. 3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귀웅)

□ 제안이유

-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,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함. (안 제2조제4항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지?○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안을 많이 다루게 되는 위원회 이니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연임 규정 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임.○ 네 알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⑤ 시장은 필요 시 각 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법 제16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법 제16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5.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 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중 “1회이상”을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“차기”를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바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

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수당과 여비)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